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국내 관세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 간 운송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각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 다.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 그리고
 - 라.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 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4.2조 일관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이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그 당사국의 지역 세관 간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

는 행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4.3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통관과 관련된 자국의 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문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문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적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4.4조

자동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 가.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나.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다. 국제무역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 라.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상품이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 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내에 사전심사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했어야 한다.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발급 당사국은 발급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의 공포 후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발급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포할 수 있다.

6.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도착지점 밖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3.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의 관세 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반출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5.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정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통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에,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12시간 내,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관세 당국의 업무 시간 외

6. 각 당사국은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검사를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7. 각 당사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마련한 모든 저장 시설에 대하여 자국의 관련 당국이 승인 또는 지정하였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 법률에 합치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

청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4.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
-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 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마.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 서류가 제출된 후 6시간 내에 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 바.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송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한다.

바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한 상품의 경우, 당사국은 공식적인 반입서류, 관세 또는 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 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9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및 상호인정

1. 양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의 이행을 증진한다.
2. 그 요건을 준수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의무, 요건, 형식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수립된다.
3.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서로 합의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인정 약정을 협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10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다음을 통보한다.

가. 결과

나.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 인의 권리 및 의무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제4.11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사를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당사국이 제4.13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4.12조

벌칙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13조

비밀유지

1.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양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고 제공한 당사국이 비밀로 분류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국이 이 조에 근거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이 행한 구체적인 비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제4.14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서로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 나. 통관 우수 관행 및 위험관리 기술의 발전과 이행
- 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 라. 기술력 및 기술의 사용 증진
- 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상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 결정
- 바. 자유무역협정 이행 통계,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할 형식 및 종류의 교환,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통관 사안

2.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제4.15조에 규정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4.15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되는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들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의 검토, 논의 및 제안
 - 나.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해석을 위한 규정의 검토, 논의 및 제안
 - 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 라 한다)의 전환에 근거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 라.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마.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개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 바. 전자 증명 및 검증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작업, 그리고
 - 사.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

제4.16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에콰도르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관세법 및 규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 관세 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운영 및 집행, 그리고 그 법적 권한에 따라 관세 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에 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운송수단이란 자연인 및 상품을 운송하여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및 항공기를 말한다.